

##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1. 4. 10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1. 4. 1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01. 9. 7)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맑은물푸른숲사업소 하수과장 고영태)

제안이유

○ 하수도사용료는 총괄원가의 36.9% 수준의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171% 요율인상 요인이 있어 하수도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 조정하여 부족되는 재원의 확보와 적자경영을 최소화하고

○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의하여 하수도사용료를 2001년까지 처리 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함

주요골자

○ 공공하수도의 사용요금을 60% 인상(안 별지)(톤당평균 115.30원 → 184.48원, 톤당인상액 69.18원)

※ 가정용 20톤의 경우 : 70원 → 110원, 톤당인상액 40원

###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 6. 수정안 요지

○ 불 임

### 7. 소수의견요지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제470호
의결년월일	제90회 (2001. 9. 8)

제출년월일 : 2001. 9. 7

제 출 자 : 건설교통위원장

#### 1. 수정이유

- 하수도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 조정하여 부족되는 재원의 확보와 적자경영을 최소화하고자 함은 타당하나,
- 하수도사용료의 인상은 상수도요금의 인상시기를 고려하여 인상함이 타당하므로 인상시기를 상수도요금 인상시기와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골자

- 하수도사용료 인상시기를 2001년 7월 고지분부터를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고자 부칙을 일부 개정

###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중 "2001년 7월"을 "2002년 1월"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u>2001년 7월</u>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 <u>2002년 1월</u> .....

###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0호
의결년월일	제90회 (2001. 9. 8)

제출년월일 : 2001. 4. 1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 제안이유

- 하수도사용료는 총괄원가의 36.9% 수준의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171% 효율인상 요인이 있어 하수도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 조정하여 부족되는 재원의 확보와 적자경영을 최소화하고
-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의하여 하수도사용료를 2001년까지 처리 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

하기 위함

주요골자

○ 공공하수도의 사용요금을 60% 인상(안 별지) (톤당평균 115.30원 → 184.48원, 톤당인상액 69.18원)

[수정안 포함]

###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 하 수 도 사 용 요 율 표

구 분 업 종	사 용 요 율		비 고	
	사용구분(m <sup>3</sup> /월)	m <sup>3</sup> 당 단가(원)		
가 정 용	1~10	90		
	11~20	110		
	21~30	130		
	31~40	185		
	41~50	200		
	51 이상	400		
업 무 용	1~20	120		
	21~50	180		
	51~100	420		
	101~300	500		
	301 이상	550		
영 업 용	1~30	150		
	31~50	230		
	51~100	430		
	101~500	750		
	501 이상	800		
욕 탕 용	1종	1~500	160	
		501~700	180	
		701~1000	190	
		1001 이상	200	
2종		1~200	350	
		201~300	460	
		301~500	800	
		501 이상	900	
산 업 용		m <sup>3</sup> 당	180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하수도사용요율표			[별표 1] .....				
업종	구분	사용요율		업종	구분	사용요율	
		사용구분 (m <sup>3</sup> /월)	m <sup>3</sup> 당 단가 (원)			사용구분 (m <sup>3</sup> /월)	m <sup>3</sup> 당 단가 (원)
가정용		1~10	<u>60</u>	가정용		1~10	<u>90</u>
		11~20	<u>70</u>			11~20	<u>110</u>
		21~30	<u>80</u>			21~30	<u>130</u>
		31~40	<u>115</u>			31~40	<u>185</u>
		41~50	<u>120</u>			41~50	<u>200</u>
		51 이상	<u>250</u>			51 이상	<u>400</u>
업무용		1~20	<u>75</u>	업무용		1~20	<u>120</u>
		21~50	<u>105</u>			21~50	<u>180</u>
		51~100	<u>350</u>			51~100	<u>420</u>
		101~300	<u>355</u>			101~300	<u>500</u>
		301 이상	<u>360</u>			301 이상	<u>550</u>
영업용		1~30	<u>95</u>	영업용		1~30	<u>150</u>
		31~50	<u>145</u>			31~50	<u>230</u>
		51~100	<u>270</u>			51~100	<u>430</u>
		101~500	<u>450</u>			101~500	<u>750</u>
		501 이상	<u>480</u>			501 이상	<u>800</u>
육탕용	1종	1~500	<u>100</u>	육탕용	1종	1~500	<u>160</u>
		501~700	<u>105</u>			501~700	<u>180</u>
		701~1000	<u>110</u>			701~1000	<u>190</u>
		1001 이상	<u>115</u>			1001 이상	<u>200</u>
	2종	1~200	<u>220</u>	2종	1~200	<u>350</u>	
		201~300	<u>285</u>		201~300	<u>460</u>	
	301~500	<u>495</u>		301~500	<u>800</u>		
	501 이상	<u>550</u>		501 이상	<u>900</u>		
산업용		m <sup>3</sup> 당	<u>115</u>	산업용		m <sup>3</sup> 당	<u>180</u>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				
			.....				
			.....				
			.....				
			.....				